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40
----------	------

발의연월일 : 2016. 10. 20.

발의자 : 백혜련 · 김상희 · 김영진
김영호 · 김정우 · 김종훈
김현권 · 박광온 · 박재호
박지원 · 신창현 · 어기구
위성곤 · 유통수 · 이언주
이원욱 · 이춘석 · 이해찬
인재근 · 정성호 · 정춘숙
홍익표 · 황주홍 · 황희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에게 비위가 있어 감찰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변호사개업 제한, 퇴직수당 삐감, 징계부과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검사의 경우

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자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u></p> <p><u>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u></p>